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12.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물의 지정)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하여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지정 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③제1항에 따라 지정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때와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영 제2조제5항에 따른 지정통보는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관리주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출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보고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영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안전점검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2010.12.20 제31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5.22 제94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016.8.12 제35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 (하도급의 통보)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하도급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진단측정장비) 영 제11조와 영 별표 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사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7.20]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일 때에만 첨부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일 때에만 첨부한다)

제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9조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등) 영 별표 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르고,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2 제94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양수인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8]

제10조의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8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
 2.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3.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4.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 중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전부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 전의 실적을 승계한다.

[본조신설 2011.11.18]

제11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② 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별표 4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진단전문기관 지도·점검 등) ① 법 제9조의6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5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등) ①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4.7.14]

1.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86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육안감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결함부위의 확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결함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하중내하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7조 (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구조상 주요부분) 영 제17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교량의 교좌장치

2. 터널의 복공부위
3.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4.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5.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6. 상수도 관로이음부
7.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제20조 (설계도서류의 보존 의무 등)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와 제출시기, 보존기간 및 열람 범위·절차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1. 대상 시설의 종류 및 명칭
2. 대상 시설의 위치 및 규모
3. 안전점검 등의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요청받은 공단은 해당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안전점검 등의 실시 여부, 안전점검 등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계획을 공단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⑤ 공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 보수·보강 실적 등 조치계획 및 이행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⑥ 공단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14]

제20조의3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① 공단은 [법 제33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내용과 방법
2. 시설물에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③ 공단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20]

제21조 (수수료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2.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진단측정장비
3.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4.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5. 제17조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
6. 제19조에 따른 구조상 주요부분
7. 제20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설계도서류의 보존 의무 등

[전문개정 2016.12.30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부칙 [95·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단측정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단측정장비를 1998년 6월 30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부칙 [9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3 제4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9 제5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3 제594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22, 제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기술자 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3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위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8.31 제278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0 제31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한

다.

② 생략

부 칙[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8 제4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 및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으로 폐업신고를 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같은 법인으로 6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1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별표 4 제2호의 법 제9조의4제1항제11호란, 별표 6의 열람범위 및 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면, 같은 서식 뒷면의 제9조의6제3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9>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2013.12.30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7 제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5.22 제94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4.7.14 제1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8.7 제120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4.12.31 제16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7 제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20 제3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조치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의 4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의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8.12 제35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제2호"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16.12.30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별 표 서 식

별표1 진단측정장비(제6조 관련)

별표2 등록분야별기술자격취득자의인정기준[제9조관련]

별표3 학력·경력자의관련학과의인정범위[제9조관련]

별표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 관련)

별표5 시설물별구조안전상주요부위의중대한결함[제13조관련]

별표6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 등(제20조제1항 관련)

서식1 시설물 지정 신청서

서식2 하도급통보

서식3 안전진단전문기관(신규, 재발급) 등록신청서

서식4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5 장비보유현황

서식6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서식7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서식8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발급대장

서식9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10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서식11 검사공무원증

서식12 안전진단전문기관점검대장

서식13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

서식14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 신청서

서식15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 확인서

서식16 준공·사용승인 통보서

서식17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서

서식18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